

울산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1가단1003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유

담당변호사 조상흠, 조후정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1. 11. 3.

판 결 선 고 2021. 12. 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11. 2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9. 23. C에게 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27810호 대여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6. 11. 10. C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지급명령 기재 대여금채권액은 '14,365,165원 및 그 중

4,199,911원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나. 피고의 배우자이자 C의 아버지인 D은 2019. 11. 28. 사망하였다. D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E, F, G, C이 있고, C의 상속지분은 2/11이다.

다. D은 사망 당시 울산 동구 H 대 152㎡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와 그 자녀들은 D 사망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는 2020.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지분인

2/11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2019. 11. 2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은 아버지인 D 사망(2019. 11. 28.) 전후로 보유하는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 이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없음에도 2019. 11. 28. 피고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피고에게 2/11 지분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보통 아버지가 사망하면 어머니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면 자녀인 C에게 상속되며 그 상속분이 증가하기에 장기적으로는 공동담보가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는 1층에 나오는 월세로 생활하기에 처분할 일이 없다. 피고에게는 원고를 해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C이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며(C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다), 피고와 C이 모자(母子) 관계인 점에 비추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 자체로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정당할 항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을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으로 선행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별지(부동산의 표시)

1. 울산광역시 동구 대 152.0㎡
중 지분 11분의 2 [고유번호]

2. 울산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96.55㎡ 2층 65.66㎡
부속건물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
2.40㎡
중 지분 11분의 2 [고유번호]

끝.

